

고 소 장

고 소 인 ○ ○ (주민등록번호: 111111 - 22222222)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전화번호: 000 - 0000

피고소인 △ △ (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)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전화번호: 000 - 0000

고소취지

피고소인은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번지 소재 '〇〇〇'식당에서 고소인에게 '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'라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.

고 소 내 용

1. 사건의 경위

- 가. 고소인은 20〇〇. 〇. 〇. 피고소인 소유의 위 〇〇길 〇〇번지 지상 상가를 보증금 〇〇〇원, 월세 〇〇원, 임차기간 20〇〇. 〇. 〇.까지로 정하여 임차 하여 지금까지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.
- 나. 피고소인은 자신이 위 상가에서 식당업을 하겠다며,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임에도 수차에 걸쳐 고소인에게 상가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오다가,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'〇〇〇'식당에 찾아와서 '일주일 내로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을 죽여버리겠다'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고소인은 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.

2.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상황

피고소인의 위 협박행위 이 후, 피고소인이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아이들에 대[§] 전체적 가해를 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외출할 때에는 꼭 고소인이 따라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,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.

3. 결론

이상의 이유로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오니, 부디 고소인 및 고소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

2. 내용증명 각 1통

3. 국립정신병원 진단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| 제출기관 | 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| 공소시효 | ○년(□>공소시효일람 x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고소권자 | 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 | 소추요건 | 반의사 불벌죄 |
| 제출부수 | 고소장 1부 | 관련법규 | 형법 283조 |
| 범죄성립 요 건 | 사람을 협박한 때 | | |
| 형 량 | · 3년 이하의 징역 ·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 | | |
|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| 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 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○ (재정신청) 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○ (헌법소원) 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 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| | |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